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감사요구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30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 근거 신설	2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4. 7. 3.

다.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수사의뢰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 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한 자가 고위공무원일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예술사업자 등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미하여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2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u> <u>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u>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u>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 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 및 제29조¹⁾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 사실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0조 및 제31조²⁾에 따라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등을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1)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이하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라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신고된 경우 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절차의 종결 등) ① 보호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고 사실이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제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을 경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³⁾에 따라 ① 수사의뢰, ② 행정처분, ③ 행위자징계 조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공무원이 예술인권리침해 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

3) 제32조(구제조치)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수사의뢰
 2. 행정처분
 3.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 및 제38조제3항에서 같다),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위공무원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할 경우 조사 및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대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긍정적인.

다만, 현행법 체계 하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5개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이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에만 제한적으로 규정⁴⁾되어 있는데, 현행법 제20조⁵⁾에 따라 설치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위원회에 독자적 행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참고로, 동 5개 특별조사위원회를 제외하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7.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요구 유사 입법례]

위원회명	근거 법률 및 조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 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 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 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 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 지를 위한 특별법」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 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개정안이 감사요구 조항이 규정된 특별법들과 성격이 다르고, 개별 법률에 감사요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고 감사 요구 폭증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⁶⁾에 따라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익감사 청구를 통하여 중대한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청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장. 다만,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불공정행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제1항⁷⁾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⁸⁾,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신고되어 조사를 거친 결과, 현행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3조제1항제1호의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⁹⁾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¹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¹¹⁾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중단·배제를 통보할 수 있음¹²⁾.

그러나 예술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에 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 금액이 낮아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³⁾.

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명령)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KBS, 「만화계 “정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강푸른 기자, 2023.7.20.

이에 개정안은 예술인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제재수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두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과징금의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정액을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기준이 다양하므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과징금 관련 유사 입법례]

규정 형식	법률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u>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34조(과징금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안 제34조의2제1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을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제13조제1항제1호(불공정계약)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예술사업자와 관련된 불공정 계약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처분하기 어려운 소액다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시정명령 불이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동법 개정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2200904)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79